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소홀

기 관 명 광주광역시, 서구

내 용

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서는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[별표1]에 따라 1종시설물(157개소)과 2종시설물(2,176개소)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.

1. 정밀안전점검 미 실시

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, 정밀점검의 점검 주기는 [표2]와 같이 되어 있다.

[표2] 안전점검 실시 실기(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[별표 1의 2])

안전등급	정밀점검	
	건축물	그 외 시설물
A등급	4년에 1회 이상	3년에 1회 이상
B·C등급	3년에 1회 이상	2년에 1회 이상
D·E등급	2년에 1회 이상	1년에 1회 이상

그러나 광주광역시(○○○○본부) 및 서구에서는 정밀점검 기간이 도래(그 외 시설물 B등급 2년에 1회 이상)되어 정밀점검을 실시했어야 함에도, 도래시기 오인(광주광역시), 예산 미수립(서구) 등 사유로 감사일 현재(2017. 9.)까지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등 소관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.

2. 내진성능평가 미실시

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사용 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런데 ○○○○ ○○사업장 ○○○동 등 사용승인이 20년이 경과된 2개의 관리주체는 2015~2017년 기간 동안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면서 내진성능평가를 하지 않아 해당 시설물이 내진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다.

[표 3] 내진성능평가 미 실시 현황

No	시설명	관리주체	점검진단기간	사용승인	내진성능평가
1	○○천변 확장구조물	서구 ○○과	‘15. 12. 8. ~ ‘16. 3. 6.	1995. 1. 1.	미실시
2	○○○○ ○○사업장 ○○○동	○○○○ ○○사업장	‘17. 5. 1. ~ ‘17. 6. 19.	1995. 4.27.	미실시

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, 서구청장은

[시정]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은

시설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시고, 정밀안전진단을 하면서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